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전국 전국종합뉴스

# 순천시 도로과, 10년 간 도로분쟁 재판 패소

10여 년 분쟁, 4년간의 재판 대법 패소

양준석 승인 2015.02.12 07:52

- ◆ 민원인 A씨, “시의 고집에 분통 터지고 재판하느라 심신도 지쳐”
- ◆ 시 관계자, “법원결정 존중. 민원인에게 죄송. 해결방법 찾겠다”

순천시 도로과가 시민 A씨를 상대로 한 10년 간의 도로분쟁이 4년 간의 법적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 건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01년 순천시가 조례 동 모 부지를 매각할 때 해당 부지를 사들여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시에서 정한 지적도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A씨가 사들인 땅은 지난 '1998년 3월 9일 순천시 측량검사필 완료' 된 땅으로 2001년 9월 7일 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 의뢰'하여 2001년 12월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 땅이다.

그런데 2003년 말 경 시 도로과 이 모 관계자가 “A씨의 건축물이 시의 땅에서 2m폭 가량 저축 되니 건축물을 허물고 위치를 옮기라고 요구”한 것. 시가 이 같은 요구를 민원인 A씨에 한 이유는 2004년부터 시작된 봉화터널을 뚫고 조례동 방향으로 새 도로를 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A씨는 시에서 지적도에 따라 매각한 땅을 사들인데다 시가 정한 지적도에 맞게 건축물을 신축했기에 시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순천시는 2004년 1월 9일 순천시 지적공사에 해당 부지의 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자, 같은 해 1월 16일 광양시 지적공사에 재측량을 의뢰했으나 광양시 지적공사 역시 A씨의 건축물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냈다.



▲ 봉화터널에서 조례동 방향의 첫 사거리 우측에 지어진 A씨의 건축물 가까이 도로가 생겨 인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건축물 안전을 위해 도로부근까지 축대형식으로 버팀목을 형성해 결국 인도가 중단되어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순천시 도로과는 계속해서 "A씨의 건축물이 도로에 물린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전남도청 지적과에 문의한 결과 전남도의 판단은 달랐다. 순천시의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문제는 순천시 지적공사와 광양시 지적공사 측량결과와 다르게 전남도 측량결과는 순천시의 주장이 맞다고 나온 것. 이유는 측량기법 때문이었다.

지적공사 순천지부와 광양지부는 모두 최초 측량기법인 '도해법'에 따른 측량기법을 사용했으나, 전남도는 신도심 측량기법인 '도근점측량'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앞서 두 번의 측량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 A씨가 건축물을 지은 후에 시가 봉화터널과 도로를 내면서 A씨의 건축물 위치에는 인도를 확보하지 못해 인도가 끊긴 상태.

◆ **순천시가 먼저 '불법건축물 철거소송' 시작**

급기야 2010년 순천시는 A씨의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불법건축물 철거요구'를 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철거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원인의 건축물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 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순천시가 패소했다. 이에 시가 항소를 하자 민원인 역시 '철거할 수 없다'며 재항소를 했으나 양측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지난해 말 대법원이 둘 다 최종 기각하면서 1심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원인 A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순천시가 최초에 땅을 매각할 당시 부지를 측량했던 기법이 '도해법' 측량이므로, 전남도가 측량했던 신도심 지역에 적용한 측량기법인 '도근점 측량기법'을 해당 부지에 적용해서는 안되고 '최초측량기법'인 '도해법' 측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남도청 고의과실 부분은 '변론'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려 당시 전남도의 '도근점 측량기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민원인 A씨는 "순천시가 측량하여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땅에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난데다, 순천시가 측량한 것에 맞게 건축물을 지었는데 난데없이 몇 년 후에 도로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철거하라고 하니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봉화터널을 빠져 나오면서 조례동 방향의 도로가 자신의 건축물 방향으로 약 1m가량 온 것이니 도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편 건물 뒤로 약 1m 폭 가량의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가 시의 부지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 도로과는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상황이라 시로선 민원인에게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다"고 사과를 하면서 "현재로선 민원인 A씨의 건축물을 사들여 인도를 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며 "A씨의 건축물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0여 년 간 민간인 신분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 행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시달린 데다, 지난 몇 년간 법적소송을 해온 터라 쉽게 물러날 태세가 아닌 A씨는 "순천시의 10년 '갑'질이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강경한 입장이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을 알리 없는 인근 주민들은 "A씨가 건축물을 잘못지어 도로를 침범해 인도가 없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적잖은 시달림과 마음고생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A씨와의 대법까지 가는 소송이 패소하면서 1,320만원의 소송비용을 낭비했다.

양준석 kailas21@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2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